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9. 24 선고 2023가단13463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화 담당변호사 김효언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4. 8. 27.

판 결 선 고 2024. 9. 24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35,453,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9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공동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.

이 유

갑1부터 갑5,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, 원고(임대인)와 피고 B(임차인)은 2023. 10. 23. 양주시 D건물 E호, F호에 관하여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임대차계약(차임 월 220만 원)을 체결하면서 그때까지 납부되지 않은 차임 2,365만 원 채권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는데, 임대차 종료로 피고 B은 2024. 3. 1. 무렵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그때까지 납부되지 않은 차임은 승계한 금액까지 모두 합하여 35,453,7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35,453,7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.

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,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므로,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판사 박이규